

2016년도 윤리경영 ombudsman 활동 내역

「윤리경영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기준」에 따라 실시한 '16년도 윤리경영 ombudsman(청렴시민감사관) 활동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
다 음

차수	일자	안건명	주요 제언 및 반영사항
1	'16. 5. 24	·외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관련 ·행동강령 규정 개정 소요 발굴 ·기타 개정소요 발굴	○익명신고시스템 도입관련, 허위신고 대응 등 원활한 제도운동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-「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제정」('16. 9. 28) ○「청탁금지법」조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용어정의부터 체계적으로 반영 -「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」및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표준안 반영 등을 통한 「청탁금지법」제정 내용 내실 반영 ·용어정의, 표현정비,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법률 주요내용, 외부강의 신고범위 및 수수 기준 변경, 하위기준 제정에 따른 위임조항 신설(개정) 등('16. 9. 28)
2	'16. 7. 27	·퇴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간 변경 (공직자 윤리법 제17조) ·구성원 윤리정책 참여근거 마련 및 청렴교육 이수기준 내실화 ·청렴담당부서 위상 제고	○공공기관 예산사용(사회적 이슈) 관련 특별감사 실시 및 직접 참여 요구 - 예산운영실태 특별감사 실시('16.8.18~26) ○청렴담당부서 위상제고(제48조) 관련, 48조 및 48조의 2 모두에 언급된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한 특례내용을 48조에서 통합하여 개정 - 「임직원행동강령」통합 개정시 위 요구사항 반영(제48조의 2 삭제·통합 및 표현정비, '16. 9. 28)
3	'16. 9. 6	·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제정안	○시스템 운용회사(레드휘슬)의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부패취약 여부 확인(익명성 보장 등) 및 향후 제도운영 추이확인을 통한 계약연장 여부 검토 - 활발한 홍보(포스터, 스티커, 동영상 등)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노력 이행 약속 ·포스터, 스티커 전사 배포(8월), 동영상 게시 (10월)
4	'16. 10. 12	·임직원행 동강령 개정건 관련 제언 등	○ 행동강령 표현정비 - (제3조) 2종 서약서 양식 통합 (제17조)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제한 관련,

			‘정보’와 ‘미공개정보’ 용어를 통합 - 위 두가지 내용 모두 권익위 강령 표준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수정 어려움 ○ 「청탁금지법」관련 공사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한 위반사례 예방 필요 - 부점별 사례 및 답변 취합, 권익위 메뉴얼, 법령 요약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시행('16.9.28) - 추가 질의·답변사례 및 권익위 해석 변경사항 지속 반영
--	--	--	---

※ 윤리경영 ombudsman 중 ○○○은 특별감사 권고에 따른 「예산 운용실태 특별감사」 실시(실시기간 : '16.8.18~8.26) 끝.